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15호 2014. 1. 6.(월)

조 례

- 사천시 조례 제1075호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---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15호(2)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075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4년 1월 6일

사 천 시 장 정 만 규

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315호(3)

【별표 2】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제1항제2호 관련)

구 분	지급기준액	월 정 수 당
의원		월 1,703,000원